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최현철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2024. 12. 23.(월)

「코스닥 2개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」 중간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금융·증권범죄 합동수사부(부장 공준혁)는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하여 **자본시장법위반죄로 8명을 기소하였고(구속 5명),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위반죄로 12. 20.(금) 구속기소하였음**
- 검찰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2024. 3. 18.경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, 이인광이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 전지 관련 甲社 주식에 대해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단서를 확인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**전직 검찰수사관이 포함된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을 통해 합계 140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였음**
 - 나아가 전직 경찰관이 포함된 주가조작 세력이 의료용 양자 센서 기술 관련 사업을 주가부양 소재로 삼아 乙社 주식에 대해서도 **시세조종 등을 하여 합계 6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도 적발하였음**
 - ※ 이인광은 현재 프랑스에서 범죄인인도절차 진행 중
- 또한 **경찰 출신 브로커가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하여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,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고, 신속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부동산 및 고급차량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하였음**
-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금융·증권범죄를 엄단함으로써, 「**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·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**」는 원칙이 자본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1

피고인

피고인	지위 등	처분	피고인	지위 등	처분
A (58세)	전직 검찰수사관	구속 기소	B (47세)	전직 경찰관	구속 기소
C (54세)	주식브로커	"	D (49세)	일용직	"
E (45세)	사채업자	"	F (54세)	전직 경찰관	"
G (36세)	사채업자	불구속 기소	H (53세)	주식브로커	불구속 기소
I (41세)	투자자문사 운영	"			

2

공소사실 요지

① 시세조종

- [A, B, C, D, H, I] '22. 11. ~ '23. 10.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甲社 주가를 상승(580원→5,850원)시켜 **합계 140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** [자본시장법위반]
- [A, B, E, G] '23. 5. ~12.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乙社 주가를 상승(813원→4,400원)시켜 **합계 11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**[자본시장법위반]

② 사기적부정거래

- [A] '23. 6. 乙社의 1,000억 원 상당 대규모 자금 조달 관련 허위공시, 乙社 최대주주 변경 미공시 등을 통해 乙社 주가를 상승시켜 **합계 50억 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**[자본시장법위반]

③ 변호사법위반

- [F] '24. 4. ~7.경 A로부터 乙社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**합계 8,000만 원 수수**[변호사법위반]

4 범인도피

- [D] '22. 12.경 이인광(해외도피 중)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甲社 주식을 매매한 후 그 이득액을 이인광에게 전달[범인도피]

3 주요 수사 경과

- '24. 11. 15. A 구속기소
- '24. 12. 2. B·D 구속기소
- '24. 12. 17. C·E 구속기소
- '24. 12. 20. F 구속기소, G·H·I 등 불구속기소

4 범행 구조

甲社 시세조종 사건

-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은 해외 도주 후 자신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022. 11.경부터 甲社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한 다음, 공범들을 순차 모집하여 2023. 3.~4.경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주가를 1주당 580원에서 5,580원까지 끌어올림
 - ※ 甲社は 당시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가도 1주당 400~500원 상당이었음
- 이인광은 甲社の 기업운영 정보를 잘 아는 내부자로부터 회사 내부정보 등을 사전에 전달받아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세력의 매매 시점을 조율하는 등 범행을 설계하였고,
 - 불과 4개월 만에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(부당이득 합계 140억원), 이를 통해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던 사실도 확인하였음

乙社 시세조종 등 사건

- 甲社 시세조종 세력 일부는 A를 주축으로 하여 乙社에 대한 주가조작에 다시 착수하였고,
 - 특히, 주범 A는 국내 재벌家 등으로부터 1,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확약서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등 기업가치를 부풀려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에 가담하도록 유인하여 합계 61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
- 나아가 본건과 관련한 조사·수사가 진행되자, A가 브로커 F에게 수사정보 제공 및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8,000만 원 상당 금품을 교부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내었음

5 수사의 의의

투자자를 현혹하는 최신 테마주 관련 주가조작 엄단

- 이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광받는 테마주(2차 전지, 양자기술) 관련 주가조작 범행으로, M&A전문가·수급세력 및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범행 대상 회사 물색·인수부터 주가부양 소재 사업 선정, 허위공시, 수급세력 동원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였음
- 피고인들은 수사 착수 이후에도 휴대폰 교체, 말맞추기, 컴퓨터 폐기 등 조직적·계획적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 방해를 하였지만, 검찰에서 전문 수사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, 주범들을 엄단함으로써 '선량한 투자자의 돈을 빼먹는 주가조작 세력은 반드시 처벌된다'는 원칙을 실현하였음
- 또한, 신속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하여 부동산, 고급차량 등 30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하였고, 향후에도 피고인들 차명 재산을 추적하여 환수조치 예정

해외에서 계획된 시세조종 범행의 전모 규명

- 검찰은 경찰과 공조하여 '24. 3. 18.경 인터폴을 통해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을 프랑스에서 검거(현재 범죄인인도 재판 계속 중)하였고, 그 과정에서 이인광의 장기 해외도피를 가능케 할 수 있었던 甲社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을 밝혀 내었음
- 해외에서 설계된 계획적·조직적 범행으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'국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끝까지 추적한다'는 원칙에 따라 이인광에 조력한 피고인들을 엄단함

6

향후 계획

-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챙겨가는 금융·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,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- 아울러 이인광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예정 